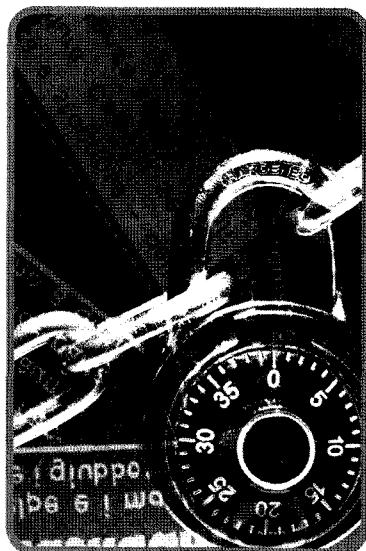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 행	개 정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公知證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및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미등록디자인을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화선 등을 통하여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때에 그 미등록디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1) 개정 이유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주요국 추세²²⁾와 설문조사 결과²³⁾를 반영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였고,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존속기간의 기산점 변경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²⁴⁾으로 심사·무심사 품목에 상관없이 100개까지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거절·일부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자인마다 설정등록일이 다르게 될 수 있어 현행처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산정시 하나의 출원임에도 디자인마다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개정 내용

현재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인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종기의 기산점을 설정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하였다.²⁵⁾

현 행	개 정
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録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權利者の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設定登録된 경우에는 第1項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録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재 출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당해 출원서류를 반려 조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함으로써 출원인은 하자가 있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22)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며,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15년에서 20년으로 존속기간을 확대하였다.

23) '08.8.21~29에 진행된 2007년도 디자인대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찬성하였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 중 77.9%가 20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뒤의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참조

25) 우리나라 등록디자인의 평균 존속기간은 51.7개월이며 10년 이상 존속한 건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 사례들(삼성전자의 LCD TV '보르도', LG전자의 '초콜릿폰' 등)이 나오고 있고, 각 분야에서 디자인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되었다. 또한, 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출원일 인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2) 개정 내용

제1항에서는 출원일 인정에 관한 요건을, 제2항에서는 절차보완명령의 절차를, 제3항에서는 출원인의 절차보완서 제출절차를, 제4항에서는 절차보완서 제출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절차보완서 미제출시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p>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p> <p>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p> <p>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있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게 적힌 경우</p> <p>3. 도면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p> <p>4.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p> <p>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한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한다.</p> <p>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지 않은 그 일부 디자인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p>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1) 개정 이유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 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현재 무심사 품목에 한해 20개까지 복수로 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출원요건 사항으로 심사·무심사등록출원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할 예정인 헤이그협정에서는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한해 100개까지 복수출원을 허용²⁶⁾하고 있어 우리 법과의 조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거나 출원공개를 청구할 경우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청구나 출원공개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디자인에 대한 거절 결정만 가능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심사·무심사등록출원 구분없이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출원인이 복수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비밀청구, 출원공개청구 또는 우선심사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또는 등록결정)도 일부거절결정(또는 일부등록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6) 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7조(3)(v)

현 행	개 정
<p>第11條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p> <p>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p> <p>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出願할 수 있다.</p> <p>④ 第3項의 规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p>	<p>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p> <p>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가 같은 것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第13條(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録日부터 3년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秘密로 할 것을請求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請求는 出願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8조의2(보정각하)</p> <p>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8조의2(보정각하)</p> <p>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第23條의2(出願公開)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3조의2(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제25조의4(우선심사)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p> <p>②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Report

시선집중

현 행	개 정
<p>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신설)</p> <p>第28條(디자인등록결정) 番查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p> <p>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결정의 이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가 있으면 그 일부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p>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오탈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 발송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등록요건과 무관한 단순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명백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디자인등록공보의 정확성을 높여 거래업계 등의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심사관이 직권보정 후 보정된 내용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 행	개 정
<신설>	<p>제28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물품의 명칭 또는 그 물품류의 구분에 명백히 잘못 적힌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⑤ 명백히 잘못 적힌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2항 등)

1) 개정 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사유(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일률적으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가혹한 경우가 있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2) 개정 내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시에는 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증명토록 하였다.²⁷⁾

현 행	개 정
제8條(新規性喪失의例外) ② 第1項의規定을適用받고자하는者は디자인등록출원시디자인등록출원서에그취지를기재하여特許廳長에게제출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書類를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30일이내에特許廳長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자기의意思에반하여그디자인이第5條第1項各號의1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72조의10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8조(출원의보정과요지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출원의보정과요지변경) <삭 제>
제19條(出願의分割)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원의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를 보건대 현행 규정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시기를 지나치게 한정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으며,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기만 하면 공개행위 등 신규성 상실 사항은 그 디자인의 공개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헤이그협정에는 조약 우선권제도, 전시회 우선권제도는 있으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규정은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한-EU FTA 협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한-EU FTA 이행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결과 통보,(변사 117-423(2010.6.15))

Report

시선집중

(5) 재심사 청구사유의 확대(안 제27조의2)

1) 개정 이유

현재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의 보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에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사항 모두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2009년 7월 1일 재심사제도 도입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을 제18조제5항 단서에 되살리는 개정을 하였다.

현 행	개 정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보정할 수 있고, 제67조의3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5. 기타 개정사항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인의 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안 제5조제3항)²⁸⁾, 심사의 순위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 규정(제16조)을 법에 반영하였으며(안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헤이그협정 가입을 대비하여 도면에 사진을 포함²⁹⁾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제3항 등)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범정부적

28) 동일 출원인 간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디자인 또는 부분적인 디자인의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리지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디자인이 먼저 완성되고 그 후에 개개의 구성부품이나 부분적 조형에 관한 상세한 디자인이 결정되며,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에 있어 독자성이 있고 창작성이 높은 부분이 모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그 부분을 부품이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자신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인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까지로 출원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권리의 실질적인 연장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동일 출원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9) 헤이그협정 제5조(iii), 공통규칙 제9조(1), 시행세칙 제401조(a)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한 국제출원에 흑백 또는 컬러로 표현된 사진과 그레픽 표현물을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면과 사진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 전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다듬는 작업까지 포함되었다.

현 행	개 정
<p>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 · 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③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되거나 제23조의6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도면은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제25조의4(우선심사)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p> <p>②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6.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 등 – 부칙 –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조문 중 일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에 시행되는 사항들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그 파급효과가 큰 것들로서 시행시기의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의 최소화 및 법률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정비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심판청구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3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제1항 · 제2항제3호 · 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단서, 제2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p> <p>②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항 · 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6조제1항 ·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단서,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p>

Report

시선집중

부 록

제3조(심판청구 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사항	관련조문	시행일
① 물품에 대한 규정 보완	§2-i, §9①iii, §9②i, §72의3①iv	○
② 디자인 창작요건 강화	§5②, §26②	○
③ 도면에 사진을 포함	§5③, §9③, §18①, §43①②, §62②iv	○
④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7, §9①iv, §9①v, §18②, §23의4①, §26②iii, §42, §46①, ⑥, §47①단서, §47⑥, §68③, §68④, ⑤ 삭제	○
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개선	§8②, §18③(삭제), §19②단서	○
⑥ 출원일 인정요건 신설	§9의2	○
⑦ 복수디자인제도 개선(선택적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신청, 심사중지, 우선심사, 거절이유통지, 디자인등록결정)	§11의2, §13①단서, §18의2③단서, §23의2①단서, §25의4③, §26④, §28단서	○
⑧ 보정시기 보완	§18①단서 후단	○
⑨ 디자인공지증명제도 도입	§25의2	○
⑩ 심사순위에 대한 원칙규정 신설	§25의4①, ②	○
⑪ 재심사청구시유의 확대	§27의2	○
⑫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28의2	○
⑬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40	○
⑭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43②	○

III. 결 론

이상에서 특허청이 마련한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올 하반기에 있게 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최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현실적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특허청의 법·제도·인프라 혁신의 2단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의 3단계 전략은 내년에 있게 될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의 도입과 선진 법체계 구축을 반영한 디자인 보호법 전면 개정이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3단계 전략의 완성을 통해 디자인 분류와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정비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 등 고객에게 매력적인 디자인제도로 혁신함으로써 향후 2년 후에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쟁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디자인제도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대한민국 디자인제도의 미래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창작노력과 기업들의 디자인경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디자인제도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주연 서기관
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제4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